

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(이하 “통합 조례”)가 2003. 12. 31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「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」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4조의 제목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 구성 등”으로 제목 변경(안 제4조)
- 나. 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보완(안 제4조)
 - 부위원장 선출방식 규정 : 위원 중 호선(안 제4조제3항)
 - 위원장·부위원장 직무 신설(안 제4조제4항)
 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·주재
 -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
 -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연임 가능규정 신설(안 제4조제7항)
 - 위촉위원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 노력하도록 규정 신설(안 제4조제5항)
 - 위촉직 위원은 3개 이상의 구 산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신설(안 제4조제6항)
 -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기록, 보존 등의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 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소집
 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-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출석사항, 안건, 발언내용 등 기록
 - 회의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 원칙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,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
 -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위원 위촉의 해지규정 신설(안 제4조의3)
 -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신체·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등

3. 검토의견

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「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」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안입니다.

안 제4조제3항 내지 제7항, 안 제4조의2, 안 제4조의3에 대한 의견입니다.

이번에 개정·신설된 조항들은 임원 선출방식과 위원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회의 회의소집, 회의소집 안건의 서면통지, 회의록 작성, 회의 및 회의록 공개, 위원 위촉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.

첫째, 안 제4조제4항과 안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장의 회의소집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중복규정으로 보아 안 제4조제4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둘째, 안 제4조제6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위촉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이런 사항은 각종위원회를 통괄하는 위원회 조례(통합조례)에서나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, 개별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셋째, 회의록 작성에 대한 것으로서 신설된 안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회의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집행부의 인력과 여건, 그리고 회의록 작성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안 제4조의2제4항 등을 감안해보면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
수정의견대비표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(생략) ④<u>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·주재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 ⑤(생략) ⑥<u>위원 위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위원이 3개 이상의 구 산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u> ⑦(생략) ⑧(생략)	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(개정안과 같음) ④(삭 제) ----- -----. ⑤(개정안과 같음) (삭 제) ⑥(개정안 제7항과 같음) ⑦(개정안 제8항과 같음)
제4조의2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④(생략) ⑤<u>회의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,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u>	제4조의2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④(개정안과 같음) ⑤ ----- (삭 ----- 제) ----- -----.

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으로서 시행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.